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December 13, 2022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28일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메타버스란, ①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②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③ 경제·사회·문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2022년 1월)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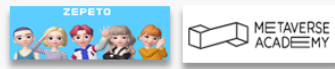
1.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

- 메타버스는 정보통신기술과 가상융합기술 등이 융·복합된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제조,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편에서는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 광범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메타버스 접속 기회에 대한 불평등 등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어 왔습니다.
- 한편, ‘윤리규범’은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사회 저변의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신기술로 인한 역기능을 완화할 수 있는 공동체의 대응방안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 유럽은 2019년 ‘신뢰성있는 AI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OECD도 2019년 ‘AI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를, 한국 정부는 2020년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각각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의 경위

- 정부는 2022년 5월 법률·윤리·철학·정보보호·디지털포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하여 메타버스 윤리원칙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연구반은 그간의 논의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실천윤리로 기능할 수 있는 윤리원칙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3대 지향가치, 8대 실천원칙).

- 먼저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디지털격차, 사생활과 개인정보침해, 창작활동 제약 등과 같이 윤리규범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이슈를 식별*하고,
 - 동 이슈와 관련된 메타버스의 특징[개인적(가상자아), 사회적(가상경제), 기술적(몰입경험), 구조적(디지털플랫폼))을 분석하였습니다.
- 정부는 2022년 9월~10월 학계·기업 등 전문가, 창작자·이용자·시민사회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대상	방법(일정)							
 전문가 • 학계·기업·시민단체 및 정부부처 전문가 34인 <table><tr><td>학 계</td><td>법학, 윤리학, 과학철학, 경제학, 경영학 등</td></tr><tr><td>기 업</td><td>네이버, 카카오, 네이버제트, 버넥트, 마이크로소프트, LGU+,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td></tr><tr><td>민 간</td><td>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킹센터, 오픈넷,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td></tr><tr><td>정부·공공</td><td>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td></tr></table>	학 계	법학, 윤리학, 과학철학, 경제학, 경영학 등	기 업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제트, 버넥트, 마이크로소프트, LGU+,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민 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킹센터, 오픈넷,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	정부·공공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 (8.26) • 온라인 설명회 (9.14, 9.15), 서면 의견수렴 (~10.3) • 정부부처·지자체 회람 (~9.29)
학 계	법학, 윤리학, 과학철학, 경제학, 경영학 등								
기 업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제트, 버넥트, 마이크로소프트, LGU+,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민 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킹센터, 오픈넷,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								
정부·공공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창작자 •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4인 • RAPA 메타버스 아카데미 콘텐츠 창작자 교육생 4인	 • 심층면접 (9.16, 9.22)								

3. 윤리원칙(안)

- 정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메타버스의 혜택과 역기능을 사전에 인지하여 자정 노력에 참조할 수 있는 보편적·포괄적 윤리규범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 경험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운영 주체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경험적 가치를 직접 창작하거나 발견하고 이용하는 주체, 즉 개발자·운영자·이용자를 그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용자에는 창작자를 포함합니다.
 - 또한 개발·운영·이용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자도 포함하였습니다.
- 정부가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안)은 아래와 같이 3대 지향가치와 8대 기본원칙으로 구성됩니다.

가. 3대 지향가치

- 3대 지향가치는, 메타버스 참여자의 윤리적 지향점,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가치를 배제하지 않는 수평적·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합니다.

o 온전한 자아(Sincere Identity)

- 개인은 가상자아가 추구할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상자아의 정체성을 성실하게 구현한다. 메타버스에서 가상자아는 선택한 가치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온전하게 행동해야 한다.
- 현실에서 발현하기 어려운 자아정체성을 가상자아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현실 자아의 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다. 다만, 가상자아의 가치와 역할이 현실 자아와 간극이 커지면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그 격차가 현실 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실 자아와 가치와 역할이 다르더라도 가상자아가 메타버스에서 이를 성실하게 구현하고 온전하게 행동하여야 현실 자아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다.

o 안전한 경험(Safe Experience)

-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모두가 발견하고 충분히 경험하려면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고 참여자가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 상대방에게 해악을 미치는 행동을 미리 차단하고 메타버스에서 모두가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메타버스 참여와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메타버스를 조성할 책임이 있다.

o 지속가능한 번영(Sustainable Prosperity)

- 메타버스가 혁신과 번영의 기회가 포착되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메타버스가 불러오는 편익과 혜택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현 세대는 책임있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메타버스의 사회경제적 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생태계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사회 전반의 수용도를 높여 새로운 주체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 8대 실천원칙

- 8대 실천원칙은 3대 지향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 각 원칙 간 우선순위는 없으며, 모든 원칙을 이행하여 지향가치가 실현되도록 합니다.

o 진정성(Authenticity)

- **(개념)** 가상자아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성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
-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성실한 가상자아 구현을 위한 상호작용 방식 개선, ②이용(이해관계)자는 가상자아와 현실자아 연관성 이해, 가상자아 실현에 세심한 노력

o 자율성(Autonomy)

- **(개념)** 이용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방식을 스스로 결정
-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참여·행동·상호작용방식 결정과정의 선택권 보장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 않도록 노력

o 호혜성(Reciprocity)

- **(개념)** 이용자간 정보와 디지털재화의 소통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
-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 주체 간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방식과 수단 지원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우호(협력)적 소통과 상호작용 실천 노력

o 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

- **(개념)** 현실과 유사한 가상세계에서 타인의 불쾌감 유발 또는 사적영역 침범 자제 노력
-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가상자아의 사적영역 보호 및 신속한 침해신고 방안 마련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 자제 노력

o 공정성(Fairness)

- **(개념)**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접근
-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창작물을 보호하고 보상의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창작 과정에서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존중 노력

o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개념) 개인식별정보, 생체정보, 활동정보 등 가상세계의 개인정보 범위를 인지, 최소수집 및 보호 노력
-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도입,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o 포용성(Inclusiveness)

- (개념) 인종, 성별, 국적, 경제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는 접근성 보장
-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성 보장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차이 인식, 편견과 차별 없는 포용적 문화 토대 마련 노력

o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

- (개념) 인류의 기본 가치(문화, 규범 등)가 보존되고 혁신과 번영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
-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메타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발·운영방식 설정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현재 메타버스의 미래 영향을 인지, 현재의 책임 있는 행동 필요

4. 정부의 향후 계획

가. 홍보

- 정부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수의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카드뉴스 제작·홍보) 메타버스 윤리원칙 3대 지향가치, 8대 실천 원칙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카드뉴스를 제작·홍보할 계획입니다(’22.12월 ~).
 - (전문가 언론 기고) 대학교수, 기업인, 소비자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등의 전문가를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확산의 필요성을 홍보(연중)할 예정입니다.
 - (해외 홍보) 해외공관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영문본을 소개·배포할 계획입니다(’23년~).

나. 보급·확산

- 정부는, 메타버스 기업들의 메타버스 윤리원칙 내재화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주 사용층인 MZ세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 국내 기업들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 지원할 예정입니다('23년~).
- 초·중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교육, 메타버스 아카데미 내 메타버스 창작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23년~).

다. 보완

- 정부는,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의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을 위한 세부 실천 윤리를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메타버스 참여 영역별 실천 윤리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현장 활용 지침서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23년~).

5. 시사점

- 정부가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마련하고, 향후 홍보, 보급·확산, 보완을 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신성장동력으로 싹을 틔우기 시작한 메타버스에 대하여 선부른 규제도입을 통하여 신산업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 그럼에도 메타버스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성희롱, 명예훼손 등 역기능에 대하여는 방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다만, 정부로서는 메타버스의 역기능이 증가되는 경향이 보일 경우, 불가피하게 윤리원칙보다 강제력이 수반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바, 향후 정부 및 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메타버스를 둘러싼 규제환경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About Shin & Kim's 메타버스·NFT 팀

법무법인(유) 세종은 ICT 산업 전반 및 방송, 개인정보, 데이터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위하여 방송, 국내외 AI, 데이터를 포함한 신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정보보호, 핀테크, 가상자산, 공정거래, 입법자문, 조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메타버스, NFT와 관련한 입법, 행정상 각종 규제(세무, 독점규제 등 포함), 게임 관련 법률, 저작권 등 IP 이슈, 개인정보 이슈, E-commerce 이슈 등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박교선 대표변호사 | T. 02-316-4233 | E. gspark@shinkim.com |
| • 강신욱 변호사 | T. 02-316-4059 | E. sokang@shinkim.com |
| • 김지훈 전문위원 | T. 02-316-2883 | E. jhookim@shinkim.com |
| • 김우균 변호사 | T. 02-316-4083 | E. wgkim@shinkim.com |
| • 안정호 변호사 | T. 02-316-2891 | E. jhahn@shinkim.com |
| • 박규홍 변호사 | T. 02-316-4290 | E. k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